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2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7. 11. 29.
- 다. 상정일자 : 제50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('97. 12. 19.)상정,심사,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조한영 교통지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급해오던 포상금이 조례에 근거하지않아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(안 제4조제8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" 제8호,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"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급해 오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조례(안) " 제8호,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" 은 입법체계상 "제8호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" 으로 수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채재선 간사) :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하는 것이 옳은지?
- 답변요지(교통지도과장 조한영) : 그렇습니다.
- 질의요지(홍성환 위원) :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제도 조례개정을 한다 면 다른구청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을 보아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데?
- 답변요지(교통지도과장 조한영) : 단속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람.
- 질의요지(이천규 위원) :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포상금은 어떠한 포상금인가? 단속건수별로 지급하면 과잉단속을 하게되고, 조례개정안을 보면 실적이라고 했는데?
- 답변요지(교통지도과장 조한영) :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실적 지급이 아니고, 단속 공무원들이 월100건이상을 단속하게 되면 정액지급하고 100건미만 단속을 못하면 지급하지 않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안 가결을 동의

6. 수정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체재선 간사 외 1인

나. 수정이유 :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.

다. 수정주요골자 : "기타"를 "불법주정가" 로 함(안 제4조제8호)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사항 : 수정안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1997. 12. 19.
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"기타 "를" 불법주정차" 로함(안 제4조제8호).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8호중 "기타" 를 "불법주정차" 로 한다.

원안 · 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세출)회계의 세출은 다음각호의1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없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~7 (생략)8.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	<p>제4조(세출)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~ (원안과 같음)8.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'97. 11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급해오던 포상금이 조례에 근거하지않아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(안 제4조제8호)

3. 개정근거

-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제15조 (1995.12.29 법률제5069호)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기편성

- 따로붙임 1)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4조(세출) (생략) 1 ~ 7 (생략) (신설)	제4조(세출) (현행과 같음) 1 ~ 7 (현행과 같음) 8.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